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7169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세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혁준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13.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31667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3행 “원고와 피고가”를 “원고와 피고들은”으로, 같은 쪽 제11행 “1,5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주철현, 판사 정경수